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4
----------	-----

2021. 11. 3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나. 제출일자: 2021년 11월 17일
-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2021년 11월 23일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당직(일·숙직)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당직수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1회 2명 근무)과 10개 교육지원청(1회 1명 근무)이고, 추가 소요액은 연간 5,800만원 정도임.
-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전국 시·도 교육청																충북 도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	60	50	50	50	50	60	50	60	50	60	50	60	50	50	60	60

- 전국 시·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직 수당을 인상하면서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 1회당 <u>5만원</u> 으로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 ----- ----- ----- <u>6만원</u>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필요 비용

3.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

나.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당직수당	1,735,920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가. 당직수당	1,735,920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안용모(부서: 총무팀 주무관 윤세광)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세 출							
당직수당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47,760	345,600	347,760	348,480	346,320	1,735,92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